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징수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를 명확
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
보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관허사업 제한 예외 사유 정비(안 제5조의2제1항)

‘질병’의 기준을 ‘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
중(喪中)인 경우’로 명확히 하고, 체납의 미인지로 인한 체납자를 보호하
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‘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
가 고지된 경우’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질병을 앓고 있는”을 “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6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 고지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)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.	제5조의2(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<u>질병을 앓고 있는</u> 경우	2. ----- ---- <u>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</u> ----- --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또는 <u>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 고지된 경우</u>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	7. ----- -- <u>제6호</u>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880